

# 역사는 진실을 알고 있다

역사는 결코 그렇게 임의대로 껴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도는 근대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에서 최초로 병합된 우리 땅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 회복의 역사, 곧 광복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론이 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가 있는 1905년 을축 조약으로 일본의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전개된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이 이루어진 1905년 을축 조약으로 러일 전쟁 전후의

있던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도는 역사

문제로서, 일제에 의한 조선 침략 전쟁의 장계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임을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꼭 알아야 한다.



일본은 이렇게

# 독도를 침탈했다



독도를 침탈했다

일본 제국의 침략



이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북아역사재단



# 일본은 이렇게 독도를 침탈했다

퍼낸 곳 : 동북아역사재단

퍼낸 날 : 2007년 4월 15일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 02-2012-6136

팩 스 : 02-2012-6186

[www.historyfoundation.or.kr](http://www.historyfoundation.or.kr)

비매품



## 역사는 진실을 알고 있다

우리 땅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였고, 지금도 동해와 함께 변함없이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은 ‘죽도(竹島)의 날’을 제정하였다. 매년 2월 22일을 기념일로 하는 ‘죽도의 날’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독도를 언젠가는 다시 탈환해야 한다.”는 일본 내의 여론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측이 ‘죽도의 날’로 정한 2월 22일은 독도를 ‘죽



도(竹島)라고 이름하고 오키도사(隱岐島司)의 관할하에 둔다고 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나온 날이다. 1905년 2월 22일에 있었던 이 고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밝혀야 할 수많은 역사적 진실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제기하는 것처럼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역사를 꺾어놓는다면 ‘죽도의 날’ 제정을 비롯하여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관련 교과서 왜곡 등



도 이유 있는 행위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그렇게 임의대로 꺾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도는 근대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에서 최초로 병합된 우리 땅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회복의 역사, 곧 광복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가 있었던 1905년을 중심으로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전개된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일본의 한반도 침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강제편입이 이루어진 1905년을 기점으로 러일전쟁 전후에 있었던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독도는 역사 문제로서, 일제에 의한 조선 침략 전쟁의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임을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꼭 알았으면 한다.



c o n t e n t s 차례

- 10 독도 하나 - 아픈 역사  
조선 침략의 첫 신호탄, 독도 강제편입
- 28 독도 둘 - 일본은 관계가 없는 조선땅  
일본 메이지 정부도 '독도는 조선땅' 인정
- 42 독도 셋 - 억지 논리  
일본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하는가?
- 52 독도 넷 - 겨레의 터전  
겨레의 체취를 간직한 우리 삶의 터전 '독도'
- 59 부 록 - 일본의 독도 침탈 일지



독도 하나

# 아픈 역사 獨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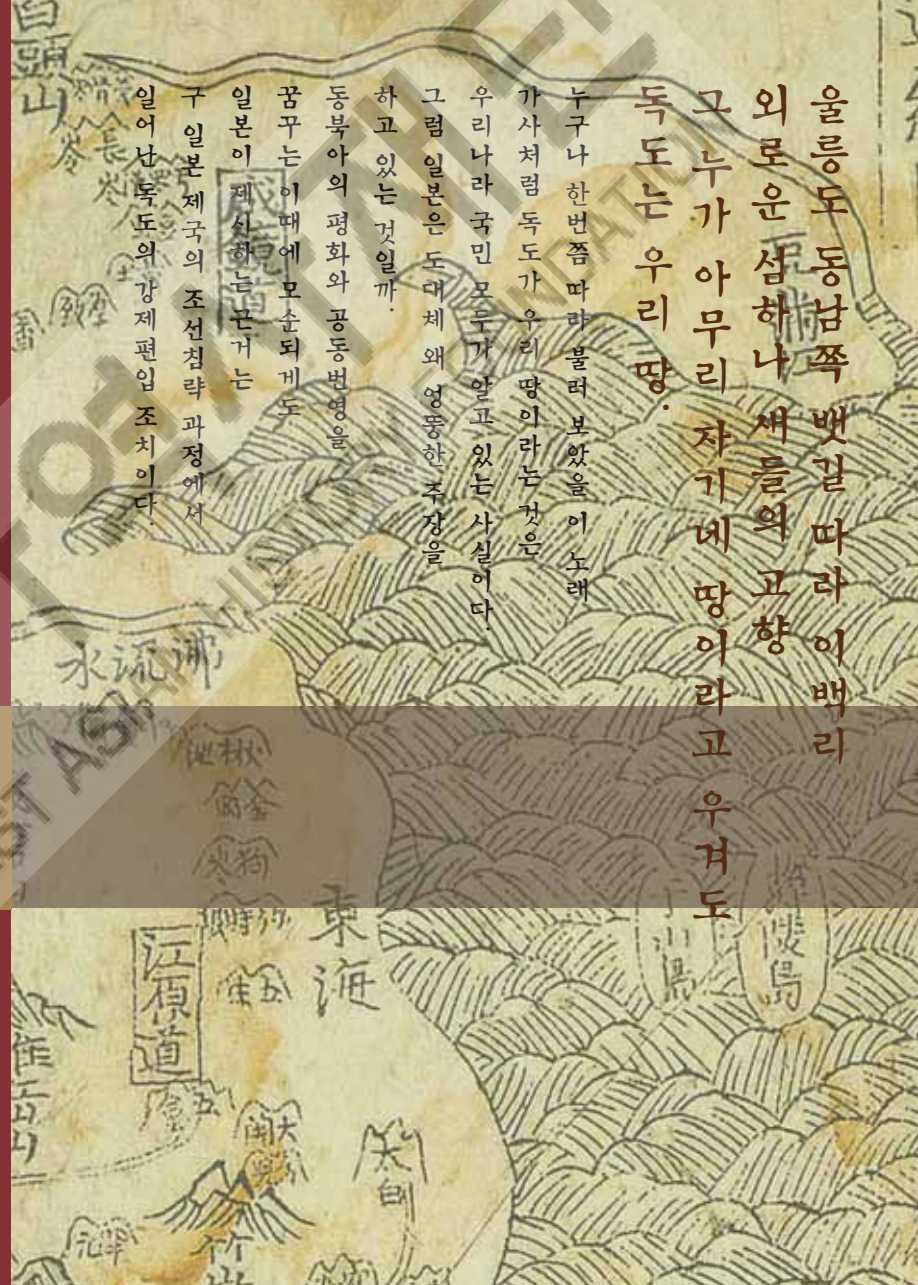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지연

NORTH EAST ASIA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차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누구나 한번쯤 따라 불러 보았을 이 노래  
가사처럼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일본은 도대체 왜 영웅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꿈꾸는 이때에 모순되게도  
일본이 꾀신하는 근거는  
구 일본 제국의 조선침략 과정에서  
일어난 독도의 강제편입 조치이다.





독도 하나

## 조선 침략의 첫 신호탄, 독도 강제편입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가사 제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그렇다. 러일전쟁이 계기가 되어 군사상 전략지점으로서 일본은 독도에 눈독을 들이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의도에 의해 최초로 침탈된 우리 땅이 바로 독도이다.

일본의 조선 침략은 1850년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후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 정한론자(征韓論者)들이 틈만 나면 주장했던 것이다.

일본의 조선 침략은 1894년 청일전쟁을 즈음하여 본격화되었다. 일찍부터 조선 침략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기회로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왕궁을 점령하고, 서울·부산·인천·월산 등지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들은 사역원·장악원 등의 중앙관서 청사를 병사(兵舍)로 사용하는가 하면, 서울~부산, 서울~인천 등 전국 곳곳에 군용전선을 설치하고 철도를 부설하여 전쟁에 이용하였다. 아산만의 풍도(楓島) 앞바다에서 시작된 일본군과 청나라군의 전투는 평양·서해 등으로 옮겨갔고, 조선의 육지와 바다는 침략의 전쟁터로 유린되었다.

### 정한론자

187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 정계에서는 한국을 공략하지는 정한론이 강력하게 대두된다.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작업을 해 나갔던 일본은 근대화 관료세력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수세력 등 두 정치세력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보수적인 무사계층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자 보수 강경파들이 중심이 되어 정한론을 주창하게 된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장악하고 청나라로부터 라오둥반도까지 할양받게 되었지만, 러시아·프랑스·독일 세 나라의 간섭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일본으로서는 조선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러시아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러시아를 배제

하지 않고서는 조선 병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조선 내에 친러 세력의 입지가 확대되는 것을 염려한 일본은 결국 친러 정책을 주도하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게 된다.



청일전쟁 전투 경과도



인천에 상륙하여 시가 행군하는 일본군 기고시 야스오카 여단(1904)

삼국 간섭으로 인해 라오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반환하고와 신상담하며 기회를 노리던 일본은 1904년 2월 8일 뤼순항에 있던 러시아 군함 2척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같은 날 일본군은 조선 정부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인천·남양·군산·원산에 상륙을 개시하였다. 일본 육군 선발대인 기고시 야스오카(木越安綱) 여단은 9일 서울로 진주하고, 이어 이노우에 히카루(井上光) 중장이 이끄는 제12사단 주력부대가 서울에 입성하였다. 일본은 10년 전 청일전쟁에서 못다 이룬 조선 병탄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추진하였다.

1904년 2월 23일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대궐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sup>①</sup>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일본은 이 의정서를 근거로 군대 주둔은 물론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점령, 수용(收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며 조선 병탄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 ① 한일의정서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한국에 대일 협력을 강요·협박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필요시 편의를 제공하고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이 한국 식민지화의 제단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강제 조약으로서, 이 문서에 서명한 이지용의 집이 폭탄세례를 받는 등 거센 반발을 샀다.

### 한일의정서 제4조

제3국의 침해 또는 배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 또는 영도보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일본 정부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수용할 수 있다.

1904년 4월 일본은 일제 조선주차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군대를 조선 전역에 확대 배치하였다. 전쟁이 본격화되던 1904년 7월 주차군 사령관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함경도에 군정을 시행하고, 1905년 1월에는 일본군 헌병대가 서울과 그 부근지역의 치안경찰권까지 장악하였다. 전쟁을 위해 군용전선과 철도를 부설하고 그것을 보호한다며 엄한 군율을 공포하였다. 군용전선이나 철도를 훼손하거나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또한 영흥만·진해 등에 요새를 설치하여 군율을 공포하고, 요새로 지정한 지역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였다. 1905년 7월 일본군이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강제수용하겠다고 한 땅은 용산·평양·의주 등지에 975만 평(약 3223만 m<sup>2</sup>)이나 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러일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인 울릉도와 독도가 강제수용의 대상에서 제외될 리가 만무했다. 러일전쟁 초기부터 일본군은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남하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와 일본의 연합함대가 마주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동해 해상권을 위협하는 가운데 일본 해군은 1904년 5월 15일을 전후한 불과 며칠 동안 해군 전력의 3분의 1을 상실하게 된다.



강제 수용되어 일본군의 감시망루가 설치되었던 울릉도 사동마을의 망향봉

일본군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새로운 군함을 건조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요구되었다. 긴박하게 전개되는 전황을 고려하

여 남아 있는 군함을 가지고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고안했다. 그것은 기지 확보와 감시망루 설치를 통하여 적함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이러한 일본의 작전 수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었다. 1904년 5월 18일 일본은 대한제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권을 빼앗도록 강요하며 울릉도에 대한 러시아의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해 9월 1일 일본군은 울릉도 서쪽과 남쪽에 감시망루를 각각 설치하였다. 이어 독도에도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군함 니타카(新高)호를 파견하여 조사하였다. 니타카호가 독도 현지 조사를 떠난 날은 9월 24일

로,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라는 자가 일본 정부에 독도의 영토편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5일 전이었다.

나카이 요사부로는 외국 연해로 나가 잠수기 어업에 종사한 기업적인 어업가로, 독도에 다량으로 서식하는 강치(鰐)를 독점적으로 잡을 공리를 하고 있었다. 당초 그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군성 수로국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 등의 사주를 받고 9

### ● 강치

물개와 비슷하며 털이 짧고 발톱이 있는 물갈퀴가 있다. 몸길이는 2m 내외로 군집을 이루어 생활하며, 멸치·오징어·꽂치 등을 먹고 산다. 한때 '가지도'라고 할 정도로 독도에 강치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가족을 탐낸 일본인들의 남획 등으로 지금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 가지도의 가지(可支)는 강치의 한자 표기



월 29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당시 나카이가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내무성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반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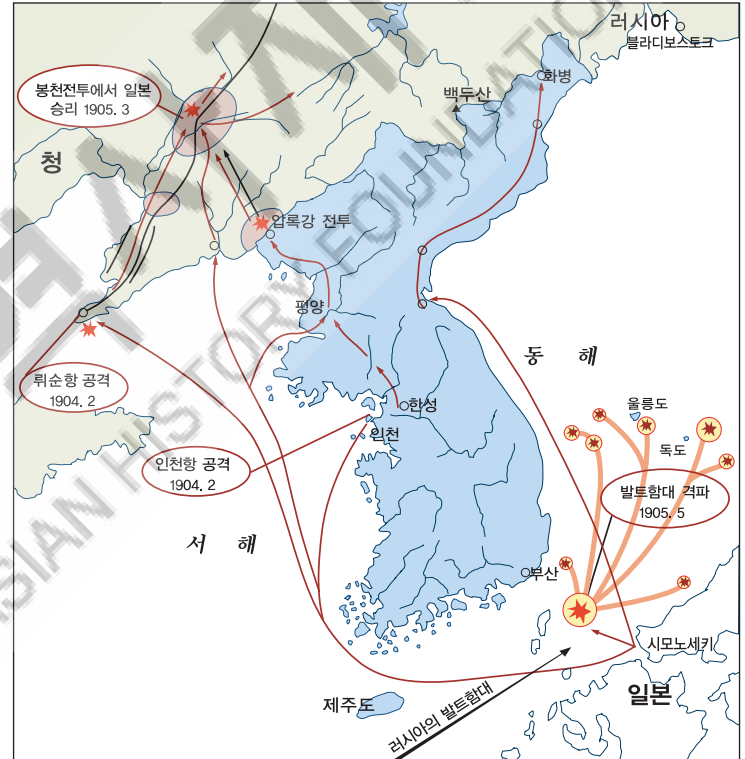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

-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사업경영개요, 1906.

내무성이 청원을 기각하려 하자 나카이는 외무성 정무국장을 찾아갔다.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인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郎)는 러일전쟁에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관여한 인물로 러일전쟁 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반응은 내무성과 완전히 달랐다.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

-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사업경영개요, 1906.



러일전쟁 전투 경과도

적함을 감시하기 위해 망루와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외무성 정무국장의 발언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1904년 11월 일본 해군은 재차 군함 쓰시마(對馬)호를 독도에 파견하여 감시망루

와 통신시설 설치가 적합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러나 독도 망루 설치에 겨울철의 험악한 날씨와 작전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되었다.

그러는 사이 1905년 1월 1일 일본군이 뤼순을 함락하자 러일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일본의 연합함대 총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는 인도양을 돌아오는 발트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일본 전 함대에 대한해협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뤼순이 함락된 상황이라 러시아 발트함대가 대한해협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일본 전시내각은 독도 침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는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桂太郎)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 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1월 28일 총리대신과 해군대신 등 11명의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 편입을 결정하였다.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자가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 서류에 의해 명백하므로 국제법상 점유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본국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일본 내각의 독도 편입 결정문(1905)

도사의 소관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이로써 신청한 각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한다.”

- 일본 내각의 독도 편입 결정문, 1905. 1. 28.

일본 정부가 나카이라는 한 어민의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 전격적으로 독도의 강제편입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어 시마네현(島根縣)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오키도사(隱岐島司) 소관(所管)으로 정한다고 고시했다. 이렇게 진행



러일전쟁 중 러시아 발트함대의 최후(1905)

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현재 일본의 논리를 뒷받침 해 주는 가장 중요한 문건이기도 하다.

한편, 러시아 발트함대는 적도를 돌아오는 7개월이라는 기나긴 항해 끝에 1905년 5월 27일 마침내 대한해협에 도착했으나, 발트함대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지칠 대로 지친 발트함대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던 일본 연합함대에 도착 직후부터 하나둘 격침되었다. 대한해협에서 부상당한 발트함대의 총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은 울릉도 근해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고, 그를 대신하여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연합함대에 의해 최종 격멸되는 순간이었다.

세계 최강 함대로 명성을 날리던 발트함대를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격멸시킨 일본군은 두 섬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절감하게 된다.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와 언제 다시 일전을 치러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은 울릉도 북쪽과 그곳에서 바라다보이는 독도에 감시망루 각각 1개씩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일본 해군은 그해 6월 하시다테(橋立)호의 재조사를 거쳐 7월 25일 독도망루 공사를 시작, 8월 19일 준공하

함대를 지휘한 네보가토프 제독도 밤새 쫓겨다니다 5월 28일 아침 독도 근해에서 포로가 되고 말았다. 러시아 발트함대가 일본



울릉도 석포마을에 남아 있는 일본군의 감시망루터

## ○ 포츠머스 강화조약

미국 뉴햄프셔주의 군항도시인 포츠머스에서 미국 대통령 T. 루스벨트의 주선으로 러일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강화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도·보호·감리권을 승인받았다. 또 중국 뤄순·다렌의 조차권과 창춘 이남의 철도 부설권,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섬을 할양받고, 동해와 오후츠크해·베링해의 러시아 연안 어업권도 일본이 가져갔다.

이어 11월 9일 독도와 일본 마쓰에(松江) 사이에 해저전선 부설을 완료하였다. 당시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독도에 해저전선을 부설하여 독도에 이은 한반도 병탄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러일전쟁 직후 독도는 당시 일본 언론에 큼직한 사진과 함께 전승기념명소로까지 소개되었다. 제국주의 일본에 있어 독도는 단순히 작은 돌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독도는 한반도 침

여 해상감시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장기전으로 예상되었던 전쟁이 그해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 체결로 예상보다 빨리 종결되자 기회를 상실한 독도망루는 10월 24일 철거된다.

한편 일본군은 1905년 10월 8일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해저전선을 부설하고



독도 사진을 게재하고 러일전쟁의 전승기념명소로 소개한 일본 신문(1906)

락전쟁의 전승기념지였던 것이다.

일본은 러일전쟁 도발 직후에 강제로 체결한 한일의정서(1904. 2.)를 시작으로, 제1차 한일협약(1904. 8.),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1905. 11.), 한일신협약(1907. 7.), 한일병합조약(1910. 8.) 등으로 이어가며, 예정했던 한반도 병탄을 마무리하였다.

결국 제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병탄 첫 신호탄이 독도였던 것이다.



독도 둘

일본은 관계가 없는

# 獨島 조선땅

일본이 독도를 람내기 시작한 것은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독도가  
 군사상 주요 전략지점임을 알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럼 러일전쟁 이전에 일본은  
 독도에 관해서면 시가를 갖고 있었을까?  
 혹시 그때도 일본 영토로 포함시키려  
 속셈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에 관해 일본 스스로도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과 관계 없는  
 조선의 영도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실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독도  
들

## 일본 메이지 정부도 '독도는 조선땅' 인정

1905년 독도를 병탄한 메이지 정부<sup>○</sup>조차도 처음에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메이지(明治) 정부는 도쿠가와(徳川) 막부를 붕괴시킨 직후 해외 진출을 통해 내환을 극복하고자 한다. 1869년 일본 외무성은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지시로 비밀리에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을 부산에 파견했다.

### ○ 메이지 정부

일본 메이지왕 때 막부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한 변혁과정의 근대 개혁정부이다. 메이지 정부는 부국강병의 기치하에 구미 근대국가를 모델로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력 강화에 노력했다. 또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구미에 대한 굴종적 태도와 달리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서 강압적, 침략적 정책을 표방했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그들의 임무는 조선과의 국교 재개 및 병탄 가능성을 내담하는 것이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는 전말'을 조사하라는 지시사항이다.

1870년 조선을 내담하고 귀국한 사다 하쿠보 일행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라는 제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병탄을 주장한 사다 하쿠보였지만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독도에 관해서는 기록된 서류가 없다."는 보고를 했다. 결국 그의 보고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당시

외무성과 태정관의 인식을 확인한 셈이다.

1877년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더욱 분명하게 인정한다. 메이지유신이라는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 메이지 정부는 지적(地籍)을 편찬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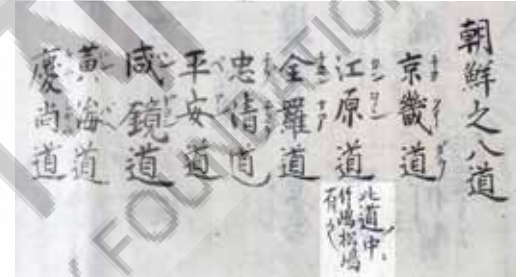
이와 관련, 일본 내무성은 1876년 10월 16일자 공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질의를 시마네현으로부터 받는다.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친 심층 검토 끝에 이 건은 1696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여기서 가리키는 1696년은 안용복 사건과 관련된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영토 확인 건을 의미한다. 1693년 안용복 등 조선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불법 조업하던 일본 어부들과 마주친 이래 한일 간에는 울릉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논쟁이 벌어졌다. 1696년 1월



일본 내무성의 품의서와 울릉도·독도를 일본과 관계 없다고 결정한 태정관 지령문(1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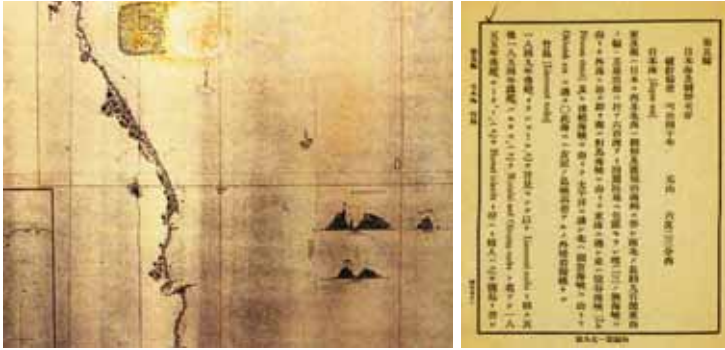
새로운 대마도주가 도쿠가와 막부 장군에게 인사차 왔을 때, 막부의 장군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에 건너가 고기잡이를 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이 같은 도쿠가와 막부의 결정은 울릉도를 넘보던 대마도주가 1693년부터 끌어온 울릉도 영유권 논쟁을 종결짓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도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안용복이 도일 당시 휴대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표시된 사실을 기록한 무라카미가(村上家)의 문서(1696)

한편, 메이지 정부의 내무성은 “영토의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중대한 일이다.”라고 하며 1877년 3월 17일자로 태정관의 최종 결심을 요구한다.

같은 해 3월 20일 태정관은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 외 1도(島)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작성하여 3월 29일 정식으로 내무성에 보내게 된다. 내무성은 이 지령문을 4월 9일자로 다시 시마네현에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



독도를 조선의 소속으로 한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 (1876)와 '조선수로지' (1899)

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다.

메이지 정부의 이러한 독도 인식은 일본 해군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76년, 1887년에 발간한 '조선동해안도', 1899년에 발간한 '조선수로지' 등을 보면 독도를 모두 조선의 부속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일본 '서북해안도(西北海岸圖)'나 '일본수로지(日本水路誌)'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당시 일본 해군성은 1876년 한 일본인이 이른바 울릉도 개척원인 '송도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를 외무성에 제출한 일로 실제 울릉도 주변을 실측한 바 있어 더욱 그러하다.

메이지 정부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국민들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 극우단체인 흑룡회에서 1903년 1월에 발행한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에는 “맑은 날 울릉도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볼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독도를 대한제국의 강원도에 소속된 섬으로 표시하고 있다.

1904년 독도 침탈의 계기를 마련한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마저 다른 어부들과 같이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 송도개척지의

1876년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란 일본인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던 중 자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섬(송도: 松島)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올린 송도 개척 청원서이다. 이에 일본 해군성이 군함을 파견해서 1880년 9월 실측 조사를 한 결과 새로 발견했다는 송도가 다른 아닌 울릉도임을 알게 된다.



독도를 울릉도 부속의 강원도 소속으로 명기한 한해통어지침(1903)

것은 그가 직접 쓴 독도 사업경영개요(1906)에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일본이 강제편입을 시도하기까지 어느 국가와도 다툰 바 없고 우리 스스로도 포기한 적이 없다.

1808년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軍政)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영토”로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하는 섬으로 존재해 왔다.

한편, 일본은 1905년 독도 침탈 전까지만 해도 울릉도를 침탈하려고 했다. 17세기 일본인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피폐해진 조선의 상황을 틈타 울릉도에 무단으로 드나든 것을 계기로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안용복의 적극적인 활동과 조선 정부의 단호한 대응으로 일본의 울릉도 침탈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울릉도와 독도 모두 우산국의 영토로 기록한 『만기요람』 군정편(1808)

그 후 잠잠하다가 1876년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일본인들의 무단 잠입이 늘어나면서

울릉도는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이 울릉도 침입을 노골화하자, 조선 정부는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을 내리고 주민 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전역을 울릉군수의 관할로 하는 등 근대적 행정구역으로 정비하였다.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로 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한편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편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본 정부는 한동안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1년 여가 지난 1906년 3월 28일에서야 시마네현(島根縣)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 ○ 울릉도 개척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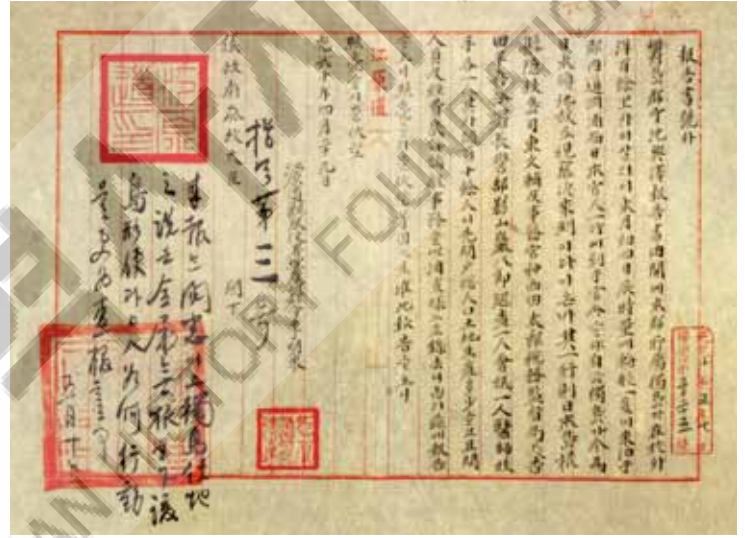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일이 잦아지자 조선 정부는 울릉도 사정을 면밀히 조사한 후 울릉도 이주를 권하는 울릉도 개척령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울릉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영·호남의 조운선을 울릉도에서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울릉도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 편입을 알린 일본 시마네현 관리들(1906)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들른 시마네현 관리 간다 요시타로(神西由太郎) 등 일본인들이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었다고 알렸던 것이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에 놀란 심흥택은 바로 다음 날 이 사실을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에게 보고하였다. 이명래도 이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함을 인식하고 울릉군수의 보고 내용 그대로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보고하였다.



일본의 독도 편입에 관한 울릉군수의 보고내용을 전하는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 보고서(1906)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1906년 5월 20일자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니, 이의 형편과 일본인이 여하히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정부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를 올렸던 심흥택 군수는 곧 울릉군수직에서 물러났다. 그가 울릉군수직을 계속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한일통신



을사조약 체결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 (1905)

기관위탁협정(1905. 4.)으로 일본이 조선의 우편·전신·전화 등을 모두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시문을 제대로 하달받았을지도 의문이다.

을사조약<sup>①</sup> 체결(1905. 11.) 이후 한국은 외교부(外交部)가 폐지(1906. 1.)되고 같은 해 2월 일본 통감부가 업무를 개시하여 철저히 그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독도 병탄에 대

### ① 을사조약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등 식민지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통감부를 신설하여 한국의 시정을 감독하고 어떠한 정책의 시행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병력동원권 등을 갖게 되었다.

해 항의하고자 해도 항의할 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때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독도 편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독도 셋

# 獨島 역지 논리

일본은 1954년부터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도 일본측은, 독도문제는 최종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역사적, 법적으로 분명한 우리 영토를 굳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오 주장하는 것은 독도 침탈의 역사를 감추고 자기 주장을 선전하는 한편, 패소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독도 셋

# 일본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하는가?

일본은 자신들이 독도를 강탈해 갔다는 것을 외면한 채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영유권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실효적 지배를 들고 있는데, 일본은 다음 두 가지 근거를 내세워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한다.

첫번째 근거로, “일본이 17세기 울릉도를 경영하는

### ● 국제사법재판소

1945년 국제연합(UN)의 창설과 함께 설립된 사법기관으로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중 하나이다. 영문 약칭은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이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확인한 도쿠가와 막부 문서(1696)

과정에서 독도를 발견하고 선박의 기항지(寄港地)로 이용했다.”는 것을 든다. 특히 17세기 중반에는 오야(大谷)나 무라카와(村川) 가문이 독도도해면허(渡海免許)를 받아 독도를 고기잡이 장소로 이용했으며, 1696년 일본 막부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을 때에도 독도는 예외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일본이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은 조선이 쇠퇴정책(○)으로 섬을 비워둔 사이에 주인 몰래 도둑질한 것과 다르지 않다.

조선 정부가 쇠퇴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은 고려 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노략질 때문이었다. 울릉도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반드시 왜구의 노략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가까운 강원도까지 위태롭게 되므로 변방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쇄환정책을 기록한 태종실록(1417)

### ● 쇄환정책(刷還政策)

변방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을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이다. 이른바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도 표현되는 쇄환정책은 변방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울릉도, 거제도 등 도서지역에서 실시되곤 했다.

조선의 쇄환정책은 그 자체가 곧 영유권의 실현행위이며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였다. 조선이 쇄환정책하에서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순찰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통치권을 행사했음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조선이 시행했던 쇄환정책을 영유권 포기 의사의 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을 무인도라고 하여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쇄환정책으로 비워진 섬 역시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조선 정부는 17세기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어와 벌목이 문제가 되자 일본측에 울릉도 도해금지를 요구하여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울릉도 수토(搜討)제도를 실시하여 이후 2년 간격으로 수토관이라는 관리를 울릉도에 파견하여 일본인들의 침범 여부를 감시했다.



울릉도 수토제도 실시를 기록한 숙종실록(1697)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이 쇄환정책을 영토의 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일본은 독도 도해면허를 부여하여 독도를 계속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도해면허는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허가서로서, 자국 섬으로 이동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도해면허

의 발급은 오히려 당시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또한 모든 토지가 영주의 것인 봉건사회에서 막부가 오야(大谷)나 무라카와(村川)와 같은 평민에게 독도를 나누어 줬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독도 도해면허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울릉도 도해면허조차도 기껏해야 1회용 도해면허에 불과한 것이었음에도 일본은 이를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두 번째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 독도에 대해 행한 조치를 들고 있다.

예를 들면, “1905년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하고 관유지(官有地) 대장에 등록한 것, 시마네현 지사 등 일본 관리들이 독도를 방문한 것, 나카이 요사부로에게 강치 어업을 허가하고 해마다 사용료를 국고 징수한 것, 그리고 어업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독도 주변에서 강치 포획 이외의 어업을 금지한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모두 러일전쟁 이후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일본의 침탈 행위는 한반도 전역



1902년 주재소를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활동한 울릉도의 일본 경찰(1905)

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으며, 독도 또한 예외일 리가 만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판소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오로지 일본 스스로가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독도는 단순히 조그마한 섬에 관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역사인식의 문제이다.”

- 한일관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 2006. 4. 25.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영토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패소가 예견되는 남쿠릴열도(북방영토)나, 승소해

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는 조어제도(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독도 침탈의 역사를 감추고 자기 주장을 선전하는 한편,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패소하더라도 현재보다 별로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조어제도 (일본명 : 센카쿠제도)	● 남쿠릴열도 (일본명 : 북방영토)
<p>중국 동부 420km, 대만 동북부 200km, 일본 오키나와 남서부 3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어도(釣魚島) 등 5개의 섬과 약간의 암초로 구성된 총면적 약 6.3km<sup>2</sup>의 무인도서이다. 일본과 중국 간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p>	<p>일본 홋카이도 동북쪽 쿠릴열도의 하단에 위치한 에토로후(網走), 쿠나시리(國後),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등 총면적 5,000km<sup>2</sup>의 4개 도서이다. 일본과 러시아 간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p>





독도  
넷

## 겨레의 체취를 간직한 우리 삶의 터전 '독도'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으로부터 동쪽으로 216.8km, 울릉도로부터 87.4km 거리에 있는 우리 국토 최동단. 수심 10m 이

내의 파식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동도와 서도를 비롯하여 주위에 89개의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섬. 면적은 모두 합쳐 18만 7,564㎡로 여의도공원에 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섬은 바로 우리 땅 독도이다. 수심 2,000m의 동해바다 한가운데 갈매기를 벗 삼아 덩그러니 서있는 독도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섬일까.

독도는 예로부터 전해 오는 조상들의 삶의 체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애환을 같이한 대한민국의 동쪽 끝 우리 땅인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 땅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켜 왔다. 조선시대의 안용복<sup>○</sup>이 그랬고, 6·25

### 안용복

조선 숙종 때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다짐받았던 인물이다. 동래 어민 40여 명과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당당히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공식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 어부의 울릉도 출입을 영구히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왔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삶의 터전을 지킨 독도의용수비대

## ● 독도의용수비대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 30일까지 독도에 침입하는 일본 어선과 순시선 등에 맞서 독도를 지키는 순수 민간 조직이다. 홍순철 대장을 비롯한 울릉도 청년 3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25전쟁에 참가했던 전투원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열악한 장비로 독도에 접근하려는 일본 순시선 및 항공기 등과 총격전을 벌이며 독도를 지켜냈다.

도가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침탈될 때 최초로 병탄되었다가 해방과 더불어 다시 되찾은 우리 땅이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를 합법이라 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 회복을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이는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회피한 채 신제국주의적 사고에 젖은 일방적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역사와 주권을

전쟁 후의 혼란스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sup>●</sup>가 그랬다. 그건 바로 독도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린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독도는 재판이나 사법적 도구로 재단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독도는 특별한 애착과 역사적 의미를 지닌 땅이다. 한반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 한일관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 2006. 4. 25.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과거의 불행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자국의 욕심만 채우는 제국주의 국가로 기억되게 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불행한 일일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한 과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드리워졌던 제국주의 일본의 상흔은 지울 수 없게 된다. 독도는 바른 역사인식의 가늠자이며, 미래 한·일 관계의 시금석이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일본은 독도에 대한 그릇된 영유권 주장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 부록 일본의 독도 침탈 일지

### 한반도 침략전쟁으로서의 러일전쟁

- 1903년 6월 23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선권과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우선권을 각각 인정하자는 '만한교환론(滿韓交換論)'에 의한 대러시아 교섭을 결정
  - 1903년 7월 23일, 조선에 대한 우위와 청나라에 대한 기회균등을 인정하려고 러시아에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1904년 2월 6일 대러 최후통첩 발송
  - 1904년 2월 10일의 선전포고에 앞서 8일 뤼순항을 기습공격하여 전함 2척과 순양함 1척을 파괴하고 9일 인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다음 육군 1개 여단(추후 1개 사단 증파)을 인천에 불법 상륙시켜 우리나라를 단계적으로 전쟁기지화
    - 강압적으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후 군령 공포, 주병·용병권 확보, 군정 시행, 토지 군용지 수용, 징발과 노역 등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이용
- (전쟁 발발의정세경)      조선 고관들에 대한 회유·협박 등 사전 정치

작업 후 이노우에 히카루(井上光) 중장의 12사단 주력부대가 서울에 진입, 대궐 주변을 포위한 후 병참기지화를 위한 한일의정서 조인(2. 23.)

**(군령 공포 및 협박)** 이노우에가 ‘포로 간첩에 관한 군령’을 공포(2. 28.) 하여 일본 군대에 중한 해를 끼친 자는 무조건 사형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한 한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궁내부 대신 민병석에게 “일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군사력에 의해 제압하겠다”고 협박(3. 17.)

**(주병용병 확보)** 러일전쟁을 위해 군대주둔과 병사(兵畧) 이용을 한반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전국에 일본군 배치

※ 1905년 10월 당시 2개 사단을 동원하여 함흥과 평양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단 병력을 동부(함경도), 북부(황해·평안도), 남부(서울·경기 이남)에 나눠 배치

**(군정행)** 전쟁 준비를 위해 함흥 등지에서 자의적으로 군정 시행

**(채 군용지 수용)** 용산·평양·의주 등지에서 군용지로 975만 평(약 3223만 m<sup>2</sup>)을 강제 수용 요구

**(징발 약)** 전쟁 준비를 위한 물자수송 등에 10만 명 이상이 동원되어 49명의 사상자 발생(1905년 6~10월 기준)

### 러일전쟁과 독도 강점

- 1904년 5월 18일, 모든 한러조약을 강제로 폐기, 러시아의 두만강·압록강 지역 삼림벌채권을 취소하고 울릉도의 일부를 군용지로 수용
- 1904년 6월 15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대한해협에 나타나 일본 수송선 무쓰호(常陸丸)와 이즈미호(和泉丸) 격침
- 1904년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울진군 죽변 등 전략지점에 무선전신 설비를 갖춘 망루 건설
  - ※ 남해의 흥도와 부산 절영도(1904. 8.), 울릉도(1904. 9.)에 군사목적의 망루를 설치하는 등 전쟁을 위해 전국 해안에 20개의 망루 설치
-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정을 체결, 일본이 지명한 외국인 고문이 조선의 외교와 재정을 감독하는 ‘고문정치’ 실시
  - 외교고문과 재정고문에 각각 스티븐슨(미국)과 메가타(일본)를 임명, 감독권을 행사하게 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사실상 박탈
- 1904년 9월 24일, 군함 ‘니타카호(新高丸)’가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탐문조사 후 망루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 ※ 니타카호 항해 일지는 “한인은 리안코루도암을 ‘獨島’라고 쓰며, 일본 어부

등은 생략하여 '량코도'라고 호칭한다"고 기록하여 문헌상 최초로 '獨島'라는 명칭을 사용

- 1904년 9월 29일, 일본인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 및 임대청원서 제출
- 1904년 11월 20일, '쓰시마호'의 부함장 아마나가 시바기치(山中紫吉)와 군의장 이마이 게비타로(今井外美太郎)가 세 시간 동안 독도에 상륙하여 조사
  - ※ 부함장은 망루 설치 가능지역을 정찰하고 군의장은 샘플 여부 및 식수 가능 여부를 조사한 후 망루 설치 가능지역 3곳과 서도의 담수 존재 보고
- 1905년 1월 10일, 내상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 수상 가쓰라 다로(桂太郎)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 회의 개최 요청
-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나카이의 '독도 편입 및 임대청원'을 승인 하는 형식으로 독도 편입 결정
-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내무성을 통해 각의의 결정을 통고받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 편입 고시
  - ※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은 울릉도 이외에 죽도와 독도를 관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 독도 강제 편입 이후 군사적 활용 실태

- 1905년 6월 12일, 해군성은 군함 히시다테호(橋立丸)에 독도 망루 설치방법의 적부를 조사토록 비밀 지시
- 1905년 6월 13일, 히시다테호로 독도를 시찰한 후 독도 정상에 망루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 1905년 6월 24일, 일본 해군성은 울릉도 북쪽에 무선전신 망루를, 독도에 보통 망루를 추가 설치토록 지시
- 1905년 7월 14일, 울릉도 북망루 기공
- 1905년 7월 25일, 독도 망루 기공
- 1905년 10월 19일, 울릉도 망루 철거 / 10월 24일, 독도 망루 철거
  - ※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 체결과 10월 15일 러일전쟁 종전으로 울릉도 및 독도 망루가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판단
- 1905년 11월 9일, 독도와 일본 마쓰에(松江) 사이에 해저전선 부설
  - ※ 한국 동해안(죽변)~울릉도~독도~마쓰에 간 해저 전신선 부설 완성

■ 가쓰라 타로..... 22	■ 서북해안도 ..... 34
■ 간다 요시타로..... 38	■ 송도개혁지의 ..... 34
■ 강치 ..... 19	■ 쇄환정책 ..... 45
■ 국제사법재판소 ..... 44	■ 수도제도 ..... 47
■ 군함 쓰시마호 ..... 21	■ 속종실록 ..... 47
■ 군함 니타카호..... 18	■ 센카쿠제도 ..... 50
■ 군함 히사다테호..... 25	■ 안용복 ..... 55
■ 기모쓰키 가네유키..... 19	■ 요시다 쇼인..... 12
■ 나카이 요사부로..... 19	■ 일본수로지 ..... 34
■ 네보가토프 ..... 25	■ 울릉도 개혁령..... 37
■ 도고 헤이하치로..... 22	■ 을사조약 ..... 41
■ 도해면허 ..... 45	■ 이명래 ..... 39
■ 독도의용수비대 ..... 56	■ 요시카와 아키히사..... 22
■ 동학농민운동 ..... 13	■ 아마자 엔지로 ..... 20
■ 러일전쟁 ..... 15	■ 죽도의 날 ..... 4
■ 로제스트벤스키 ..... 24	■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 ..... 31
■ 만기요람 ..... 36	■ 조선동해안도 ..... 34
■ 명성황후 ..... 14	■ 조선수로지 ..... 34
■ 무라카미가 문서..... 33	■ 지령 제3호..... 39
■ 메이지 정부 ..... 30	■ 정한론자 ..... 13
■ 박제순 ..... 39	■ 청일전쟁 ..... 13
■ 발트함대 ..... 22	■ 칙령 제41호..... 37
■ 북방영토 ..... 50	■ 태정관 ..... 30
■ 사다 하루보..... 31	■ 포츠머스 강화조약..... 26
■ 심흥택 ..... 38	■ 한일의정서 ..... 16
■ 시마네현..... 4	■ 한일통신기간위탁협정 ..... 39
■ 시마네현고시 제40호 ..... 5	■ 한해동어지침 ..... 35